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45
------	-----

제출년월일 : '94. 8.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정이유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2. 12. 8)」·「동법시행령(93. 6. 24)」·「동법시행규칙(93. 7. 31)」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에관한규칙」,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안 제2조)
- 사업자 또는 주민의 기본적 책무 부여(안 제3조 및 제4조)
-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안 제5조)
-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서 15인 이내의 재활용 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민간에 의한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또는 재활용품의 수리, 수선 및 판매 등 자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민간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법 제15조 제5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3.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 3 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1회 용품의 사용 자제·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구청장은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 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 7 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조자 등 또는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부산적합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하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 공무원·주민·단체·관련학자·재활용 사업자 중에서 15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재활용촉진협의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 1의 해당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 ②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②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 제277호, 1993. 10. 9) 제10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를 삭제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 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객석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 목욕탕)	1,500	2,500	3,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종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억제를 위한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단위 : 천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비고
	1차	2차	3차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2.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행기간연장신청서

 제조자 또는 사업자

처리기간

 일반폐기물배출자

7 일

① 상호(명칭)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		
⑤ 조치명령 및 기간	⑥ 이행완료 예정일	
⑦ 조치명령내용	⑧ 연장신청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에
 제5조 제3항]

관한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직할시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수
2. 포장재보유량 및 향후 사용억제 계획	수
3. 1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 억제 계획	음
4. 1회용품의 보유량·향후 사용기간	
5.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계획	
6.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7. 일반폐기물 배출자 재활용 기준 준수계획(일반폐기물 배출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이 행 완 료 신 고 서				처 리 기 간
				7 일
신 고 인	① 상 호(명칭)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주민등록 번 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사 업 장 소 제 지				
⑥ 조 치 명령 및 기 간		⑦ 이 행 완 료 일 자		
⑧ 조 치 명령 내 용		⑨ 이 행 완 료 내 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부산직할시하구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 완료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직할시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